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1-3행정부]
원고(피항소인) 김정덕
피고(항 소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
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의 요지 등

가. 원심 판결의 요지

(1) 원심은,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
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하 이 부분 거
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중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
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부분(다만 각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감사결과보고서의 비공개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
고하였습니다.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2)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정보는 실제 업무수행자를 특정하는 기재 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교내성폭력 사건이 언론보도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부분도 상당한바, 이 사건 정보는 그 후속 처리 결과에 불과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이고,

③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학교명, 미투 발생시기, 피해사례, 특별감사 시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는 헌법상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바,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 외의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감
사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 중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
한 부분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
다.

그러나 원심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원심 판결 전반에 대하여

가. 원심 판결의 전반적인 태도

- (1) 원심 판결에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과 이에 충돌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상반된 법익에
관한 비교교량 등에 있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없고, 무엇보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향후 업
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의 조사결과
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리는 것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여서, 가해교사의 성명부분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는 공개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이익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이익형량의 기준이 그리하듯 해당 사안이 공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에도, 원심은 정보공개의 논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법익의 비교교량을 하지 아니하고 향후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또는 중요한 관심사 등 공익적인 관점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 (2)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의 관점에서 또는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개를 통하여 얻어지는 알 권리 등 제반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 자칫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은 충돌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상반된 이익은 엄격한 유해성 심사(harm test)와 공공이익 심사(public interest test) 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교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는 개인의 신상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타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적인 자료 등이 노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장애를 초래할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가 제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개인신상 관련정보의 공개만이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또는 정책집행의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헌법상 알권리 및 국정의 참여 등 공익실현과 관련하여

(1)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헌법상 알권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심 판결문 6쪽 참조).

(2)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나 국정운영의 참여 등이 반드시 행위교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형태로 개인신상에 관한 징계정보 등을 공개하였을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징계사실 공표의 목적은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주된 목적인데 그러한 예방효과는 해당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 피고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사건 원고 홍○○가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되었다는 사실을 공연히 공표하여 해당 사건 원고 홍○○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단44581 판결 참조).

- (3) 위와 같이, 이른바 ‘스쿨미투’ 사안에 있어서 학생, 보호자,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성폭력 사건을 안전하게 신고하고 이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위교사의 개인신상 및 징계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공에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이 과연 몇 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몇 건에 대해 인사조치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위교사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2019년 스쿨미투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보시면 2019 ‘스쿨미투’ 신고건수는 총 60건입니다. 이 중 SNS를 통해 인지된 건수는 없었고 모두 학교·교육청·교육부 등 공식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45건(75%)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중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을 제 10호증 서울시교육청 2019 스쿨미투 현황).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대한 원심판결의 위법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관련

가. 원심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성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실제 업무수행자를 특정하는 기재 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내용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감사업무를 포함한 인사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성이 있습니다.

나. 개인신상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비공개 원칙 -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2012. 8.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통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을 제8호증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32면 참조).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 전보, 승진 등의 인사발령 사항의 외부공개가 필요할 경우 근로계약체결 시 동의 확보(사내규정, 동의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 동의)
- * 단, 징계처분,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
- * 직원 윤리교육 등을 위한 징계사례 전파는 개인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시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신상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

이 사건 정보는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로서, 모두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인 동시에 개인신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신상에 관한 불이익 처분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에, 개인정보에 침해를 초래하고, 이는 인사관리 업무 전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이른바 스쿨미투 사안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담임해제, 업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학교장 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역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은 명백하고, 이는 알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하는 지점으로서 인사권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재량적 비공개를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원심 판결과 같이, 개인신상에 관한 불이익처분 정보에 관하여, 성명만을 지운 채 학교명 명시 등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쉽게 행위교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형태로 다중에게 공개한다면, 이는 정보공개로 인해 행위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그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쿨미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사건에서도 개인신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관련한 정보가 다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엄중히 보호하도록 규정해 놓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함이 적법함에도, 위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위법합니다.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4.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한 원심 판결의 위법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관련

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판단의 부당성

(1)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3항 및 제5항 참조). 이러한 취지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0조 제4항 및 제7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공무원 징계령은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지만, 징계처분결과는 피해자 외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모든 교원에 대한 징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장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누구인지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례에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비공개가 원칙”, “교장 B씨는 학교 급식 반출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알리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면서 A씨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대처 계획을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을 제9호증 서울신문, ‘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2020. 3. 17.자 보도 참조).

(2) 인사관리 사항 및 징계 정보

이 사건 정보, 특히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에는 2018년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타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 해당 개인의 사적인 자료 등이 노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에 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가 제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범죄사실기록” 및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기준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취급되어야 온당합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생활 비밀 또는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위법합니다.

나. 행위교사 특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등

(1) 원심의 심리미진의 위법 등

이 사건 정보에는 그 정보의 대상인 행위교사가 특정되어 함께 공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점이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정보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자를 특정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고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 원고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충암학원을 ‘C학원’으로, 원고 이00을 ‘행정실장’으로, 원고 박00을 ‘학교장’으로 표시하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C학원에 대하여 2011년 특별감사에서도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점과 교육지원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청의 위생평가결과가 해마다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적시하였으므로 충암학원 또는 충암중·고등학교 주변인이라면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각 박00과 이00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보도자료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각 2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5호증 판결문(2016가합536843), 을 제6호증 판결문(2017나2052499), 을 제7호증 판결문(2018다228769)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알 권리 등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사익이 충돌할 경우 엄격한 유해성 심사(harm test)와 공공이익 심사(public interest test)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및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정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교사의 특정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위 대법원 판례에서의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 법리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정보가 행위교사의 인사관리 혹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통해 개별 행위교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이 사건 정보는 특정한 교사의 인사관리 혹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3) 행위교사 특정 여부

(가)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 2020. 2. 18.자 참고서면과 참고자료(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각 학교별로 SNS에 나타난 스쿨미투 게시물 및 이를 분석·정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 참고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른바 ‘스쿨미투’ 관련 내용들은 이미 SNS와 언론 기사를 통하여 관련 교사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비위 내용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와 같이 학교명을 특정한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를 SNS와 언론 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 행위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설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식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2018년 스쿨미투 공론화가 되었던 23개교의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주변인’이라면 본인 학교의 특정 교사가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광남중학교의 스쿨미투 관련 SNS 및 언론 기사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사의 담당과목, 성별, 실명이나 성씨 또는 이름, 나이 등과 더불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학교 홈페이지상의 교직원 소개 부분을 링크해두기도 하였습니다(피고의 2020. 2. 18.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참조).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그런데, 만약 원심 판결대로 행위 교사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SNS 및 언론기사에 이미 공개된 위와 같은 자료들과 이 사건 비공개정보에 포함된 소속 학교, 비위 내용,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징계대상자의 실명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그 정보의 대상인 행위교사가 특정되어 함께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4) 소결

이처럼 이 사건 정보는 비록 행위교사의 성명만을 가리고 공개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쉽게 행위교사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 점이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보공개의 논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 그 밖의 ‘학교명’ 공개와 관련한 원심 판결의 부당성에 관하여

-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9. 8. 27. 학교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학교명**, 미투 발생시기, 피해사례, 특별감사 시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나머지 정보¹⁾를 통하여 피고의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1) ‘이 사건 정보’를 뜻합니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원심 판결문 6쪽 참조).

- (2) 그러나 피고가 공개한 정보에는 ‘학교명’이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명’을 특정한 형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던 것인 바, 원심은 ‘학교명’ 공개와 관련한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위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원고가 ‘학교명’을 특정한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요청하였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요청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특정한 형태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 학교의 행위 교사가 특정됨은 물론 해당 교사의 인사관리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3)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학교명’을 특정하여 공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한 원심 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부당합니다.

라. 기타

- (1) 피고는 여러 시·도교육청 가운데 특히 성평등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피고는 학교 내 예비·현재 구성원(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또는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처분이 가해교사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교사를 엄중히 처분하는 가운데 다만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이 점에 대해 원고도 인식을 달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2) 현재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존하고 있듯이,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자유법 등 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교육청은 교육기관 개인정보공개의 공적범위에 대해 유관기관 논의를 통해 합의된 합리적 정보공개 범위 설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상충되지 않는 정보공개 범위를 도출하여 불필요한 갈등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안에 대해 원고측이 피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실명을 언론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과 관련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한 담당공무원들의 방문에 대하여, 원고측은 공무원들의 실명을 정치하는 업무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세금으로 시민 권익 해치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들의 엄벌징계를 촉구한다거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녹음한 면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피고는 시민사회단체로서 공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원고측을 존중하고
있으나, 최근 원고측이 한 위와 같은 대응은 자칫 정보공개청구 사안의 본질
을 왜곡하고 정치쟁점화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의 진정성이 담당 공무원들에 대
한 개인적 비난으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
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감정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이고, 공무원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등의 적극 행정이 위축될 수 있음에 우
려를 표합니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현저한 지장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행위교사 특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및 학교명의 공개와 관련한 사실오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한 판단에 이
르기까지, 상충하는 법익에 대한 비교교량에 있어 전반적으로 논리를 지나치

世 界 法 務 法 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게 단순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은 그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5호증 판결문(2016가합536843)
1. 을 제6호증 판결문(2017나2052499)
1. 을 제7호증 판결문(2018다228769)
1. 을 제8호증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32면
1. 을 제9호증 서울신문, ‘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2020. 3. 17.자 보도
1. 을 제10호증 서울시교육청 2019 스쿨미투 현황
1. 을 제11호증 보도자료(2020. 4. 20.자 정치하는 엄마들, 서울시교육청공무원 부적절한 공무수행 엄벌요구 진정서 제출)
1. 을 제12호증의 1 신문기사(2020. 4. 8.자 연합뉴스, 여가부-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협의회)
1. 을 제12호증의 2 언론보도(2020. 3. 29.자 KBS, 서울시교육감 “교직원 ‘n’번방 가담 적발시 즉각 직위해제·엄중처벌”)

첨 부 서 류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 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20. 4. 29.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현 범

담당변호사 윤 문 수

담당변호사 박 용 식

담당변호사 안 은 진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귀 중

世界法務法人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101호(서초동,법조빌딩) (우:06595)
전 화 : 02-598-1100 · 588-0001 FAX : 02-598-1744~5
E-mail : segye33@gmail.com